

환경부 공고 제2013-105호

#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2013년 3월 8일 / 환경부장관

## 1. 개정이유

최근 실내 활동 유형 및 실내공기 오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,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바,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, 건축자재 등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, 실내 라돈 저감 등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제명의 변경

다중이용시설 외 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의 확대 등을 위해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을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으로 변경함

### 나. 실내공기질 관리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
관계부처와 공동으로 “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(5개년)”을 수립하고, 정책 심의기구인 “실내공기질 관리 위원회(위원장: 환경부차관)”를 구성·운영함

### 다.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의 부착(안 제11조, 제15조)

- 1)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음
- 2)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함

### 라.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마련(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)

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, 인증시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의무, 교육 등을 면제할 수 있음

### 마. 실내공기질 관리범위의 확대(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)

- 1)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수단(철도, 지하철 등)을 포함시키고, 이에 대해 “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지침”을 고시할 수 있음
- 2)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기준치 미 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- 3) 일반 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보급할 수 있음

### 바.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(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)

건축자재, 목질판상제품 등에 대해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, 저급 제품의 제조·판매 등을 제한함

### 사. 실내라돈의 체계적 관리(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)

전국 라돈 실태조사를 토대로 라돈지도도를 작성하고, 기준 초과 시 라돈 관리지역으로 지정, 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

환경부 공고 제2013-207호

#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3년 4월 22일 / 환경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법을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(농업·임업 및 어업 → 인명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)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(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)를 포함하여 신청절차 신설(안 제12조제3호)
- 나.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식 추가(별지 제7의2호)

##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3년 4월 8일

### 1. 개정이유
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(법률 제11664호, 2013. 3. 22 공포, 2013. 5. 24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반납된 배출가스저감장치(저공해엔진)중에서 재사용·재활용할 수 없어 매각하는 대상(안 제36조의10)  
배출가스저감장치(저공해엔진)의 저감효율이 최소 저감효율 미만이거나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함
- 나. 매각된 배출가스저감장치(저공해엔진)의 비용에 대한 사용 용도(안 제36조의11)  
저감장치의 클리닝비용, 재사용하는 저감장치의 부착비용, 기타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으로 정함

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 » 법령·정책 » 법령정보 »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